과 업 지 시 서

[도시건축통합계획 실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기법 연구]

2022. 3.

국가건축정책위원회

<u>목 차</u>

ᅵ. 개 요1
Ⅱ. 주요 과업내용1
Ⅲ. 과업수행 지침 ······ 2
□V.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 6
∀. 예정공정표 7
VI. 보안대책 ······8

Ⅰ. 개 요

1. 과업명: 「도시건축통합계획 실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기법 연구」

2. 과업배경 및 목적

- 현행 도시설계제도는 신도시 개발 시 수립되는 지구계획과 기성 시가지 관리를 위해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구성
 - 다만, 현장에서 결정조서와 시행지침 등 관행적으로 도서작성과 절차진행이 이뤄지고 있으며, 2차원적인 도시계획으로 국한
- 당초 도시설계가 목표하는 지구계획과 건축설계를 통합·연계한 3차원적 입체적 공간설계 구현에 한계
-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도시설계 차원의 기준 및 적용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도시-지구-건축 차원에 이르기까지 계획적인 3차원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및 사례 중심의 체계적 실무자 가이드북 개발 필요
 - 다양하고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되는 도시건축통합계획의 디자인 실무 지침서의 역할 기대
 - 실무자의 입체적 계획 및 설계의 방법론적 이해도 향상 목적

3. 예 산: 7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 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함.

4.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 단,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Ⅱ. 주요 과업내용

- □ 도시건축통합계획 시범지구의 마스터플랜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례 분석
- □ 형태기반 설계지침 방법론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적용방안 제시
- □ 도시건축통합계획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이드북 개발
- 도시건축통합계획 시범지구의 마스터플랜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사례 및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우수사례 분석
 - 도시건축통합계획 시범지구의 마스터플랜과 지구단위계획의 도시설계적 내용 및 형식 분석
 - 입체적 공간환경 구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한계 및 문제점 분석(도시/건축/환경 등 공학분야와 더불어 인문/경제/예술분야 전문가 연구참여 통한 극복 방안 제시 등)
 - 기존 지구단위계획 문제점(계획의 위상, 추진주체 및 일정, 의사 결정체계 등) 및 우수사례(세종시 생활권계획 포함) 분석
 - ② 형태기반 설계지침 방법론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적용방안 제시
 - 형태기반 설계지침이 적용된 도시설계 구성, 계획항목, 물리적 형태기준 등에 대한 우수 사례 수집 및 분류

- 국내 도시 및 건축설계 관련 법률에 적용 가능한 형태기반코드형 지구단위계획 실현을 위한 수단(도시계획 엔지니어링과 더불어 건축 설계 실무자 참여 등) 개발 제시
- 도시건축통합설계 실행을 위한 제약 법률 검토 및 대안 제시, 법률·제도의 정합성 분석

③ 도시건축통합계획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이드북 개발

- ㅇ 입체적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자 가이드북 개발
- 도시건축통합계획 실무 반영 관련 가이드북 상세 사항(지구단위 계획 이해도 향상 및 공유를 위한 축척 반영 도시평면도 작성 등) 제시
- ㅇ 가이드북 활용방법의 교육 및 홍보방안 제시

Ⅲ.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지침

- 1)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부 과업별 인력투입 계획, 추진일정 계획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계획은 과업수행 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 2)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예정 계획에 의거 전월까지의 추진상황 및 금월 추진계획을 익월 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3)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 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 및 참여연구 진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6) 본 과업에서 취득한 현황조사 결과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에 연구하였거나 진행 중인 연구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7) 과업 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 1) 용어의 해석
- ㅇ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한다.
- 2)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변경
-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서상의 과업 담당자를 본 연구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에는 변경할 수 있으며,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과업이 중지되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은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 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내용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협조 등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4) 자문회의

-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연구자문단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구성하고,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연구수행 과정상의 주요 내용을 검토·보완 할 수 있다.
- 자문회의 개최시기(일정) 및 자문사항은 연구 진행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성과품 소유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용역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과 이를 원 제작물로 하는 2차 저작물 및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등을 포함하는 저작권, 판권, 특허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은 우리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 6)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 상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7)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 본 과업완료 이후에도 과업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재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처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계획공정에 비해 현저히 공정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고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9) 특허권의 사용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 수행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0) 기타사항

- 용역계약 후 과업지시서상에 수록된 내용 이외에 발주처의 각 시행 부서나 관련 지자체의 행정기관이 보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한다.
- 연구 추진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도록 한다.

Ⅳ.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1. 과업보고

- 1) 착수보고 : 계약 후 14일 이내에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예정공정표 포함),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 2) 중간보고 : 연구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별개의 공개포럼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3) 최종보고 : 과업의 최종결과를 작성하여 준공 14일 전에 보고한다.
- 4) 수시보고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한다.

2. 일반사항

- 1) 최종 제출 성과품은 가이드북 1식으로 한다.
- 2) 과업 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최종보고서(안)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토록 한다.
- 3)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 를 하여야 하며, 이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 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1) 제출 성과품

구 분	제출 시기	제출수량	비고		
착수보고서	계약 후 14일 이내	15부	과업수행계획		
~~~~~~~~~~~~~~~~~~~~~~~~~~~~~~~~~~~~~	기본계획 초안 마련 시	15부	과업수행계획		
최종보고서(안)	준공일 14일전	15부	최종보고서(안)		
최종보고서	준공검사원 제출시	160부	최종보고서(CD포함)		

- ※ 제출수량 및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2) 보고서 작성 및 인쇄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 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자 및 한자 등을 병용할 수 있다.
-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ㅇ 표지, 양식 등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 ∨. 예정공정표

H		월 별 공 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 도시건축통합계획 시범지구의 마스터플랜과 지구단위계							
<b>획 수립 사례 및 기존 지구단위계획 우수사례 분석</b> ○도시건축통합계획 시범지구의 마스터플랜과 지구단위계획							
의 도시설계적 내용 및 형식 분석, 기존 지구단위계획 우							
수사례 분석							
ㅇ 입체적 공간환경 구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한계							
및 문제점 분석							
2. 형태기반 설계지침 방법론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적용 방안 제시							
O 형태기반 설계가 적용된 도시설계 지침의 구성, 계획항목, 물리적 형태기준 등에 대한 우수한 사례 수집 및 분류							
o 국내 도시 및 건축설계 관련 법률에 적용 가능한 형태기 반설계형 지구단위계획 수단 개발							
3. 도시건축통합계획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이드북 개발							
ㅇ 입체적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자 가이드북 개발							
ㅇ 가이드북(안)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 후 최종 개발							
o 연구과제 활용방법의 교육 및 홍보방안 제시							

### Ⅵ. 보안대책

- 1)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 세칙(국토교통부훈령 제1호, '13.4.10)" 및 국가건축정책위 원회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 하여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 3)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전량 납품한다.
- 4)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5) 과업 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6)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 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7)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8)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 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 9) 과업수행 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 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 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 10)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 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하여야 한다.
- 11)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 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12) 용역 종료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반납 (삭제)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 13)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토 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